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
-------------------

# 보도자료

# 对人, 对社会会! 对是是 考虑的什么

			AND AND
보도 일시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일시	2022. 7. 1.(금)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팀 장 서현정(044-200-2293)
<총괄>	사회복지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동빈 (044-200-2289)
담당 부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책임자	팀 장 권민정(044-202-1720)
<총괄>	사회전략팀	담당자	사무관 김정환(044-202-1714)
담당 부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책임자	팀 장 방석배(044-202-1760)
<총괄>	방역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이원의 (044-202-1757)
담당 부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책임자	팀 장 김일열(044-202-2320)
<총괄>	의료대응전략팀	담당자	사무관 김정열 (044-202-1835)
담당 부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책임자	팀 장 곽순헌(044-202-1790)
<총괄>	환자병상·치료시설팀	담당자	사무관 김동현 (044-202-1972)
담당 부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책임자	팀 장 김옥수(043-719-9150)
<총괄>	자원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이상우(043-719-9161)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 체계 점검 -

- ◈ 재유행에 대비한 일반의료체계 내 의료 및 병상 대응체계 점검
- 호흡기 증상자, 확진자의 검사·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코로나19 진료기관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7.1.~)
-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곳에서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6,206개소 확보(6.30일 기준)하고 향후 1만개소까지 확대 추진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현황은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코로나19 홈페이지,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대국민 안내와 홍보 실시
- 병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인접 시·도간 '권역별 병상 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상황실(중앙, 권역) 운영, 예비병상 확보 사전조치 실시
- ◈ 코로나19 정부 지원 의료장비 관리 강화
- 코로나19 환자치료를 위해 지원된 국가지원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지침 배포
- 자체 보관이 어려운 이동형 음압기에 대한 통합 보관방안 마련 추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정비방안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활용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1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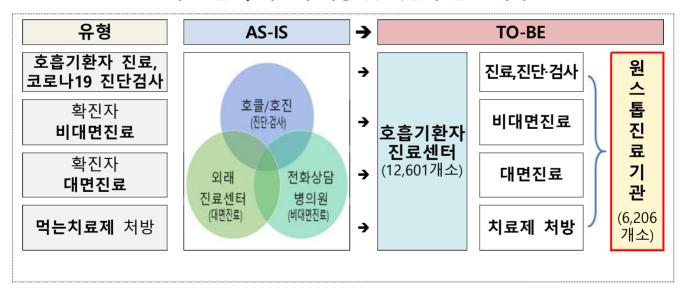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에서 감소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나, 6.29일 기준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1만명을 초과(10,463명)하고, 감 염재생산지수(Rt) 값이 1에 도달하는 등 재유행 가능성이 여전 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대비하여 **일반의료** 체계 중심의 대응전략을 준비하면서, 의료대응체계 및 병상 대응체계에서 준비 중인 과제를 점검하였다.
- □ 먼저, 의료대응체계 측면에서는 호흡기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진단 검사·치료제 처방·진료 등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 기존의 코로나19 진료 등을 담당해 온 호흡기의료기관, 외래진료 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 원화**하여 운영한다.(7.1~)





- 특히, 국민이 한 곳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에서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곳에서 모두 가능한 기관을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 7월 1일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2,601개소를 확보하였으며, 그 중 진단검사·진료·치료제 처방 등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on e-stop) 진료기관'은 6,206개소를 확보하였다.
- 앞으로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소까지 확대함으로써,
   재유행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진료, 치료제 처방 및 확진자 진료 체계 >



○ 아울러,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지역 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현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하도록 하고, 코로나19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 사평가원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재할 예정이다.





- \* 코로나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 다만, 센터 현황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은 7 월 중 마련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 유증상자 및 확진자는 **시스템 마련 전**까지 **사전 전화예약** 등을 통해 **센터별 현황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 □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대응체계도 정비한다.
  - 치료병상의 경우, 오미크론 유행 시 입원환자 증가에 대응해 3월 3만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고, 입원대기를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병상을 운영해 왔다. 이후, 확진자 감소세에 따라 병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감축을 추진해 왔다.
    - \* 6.30일 기준, 총 6,227병상 운영 중(중증병상 1,486병상, 준중증병상 2,356병상, 중등증병상 493병상)
  - 이와 함께, 가용 병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권역별 병상 공동활용 체계」를 마련하여, 인접 지역끼리 7개의 권역\*을 설정하 도록 하고, 필요 시 권역 공동대응상황실을 통해 권역 내에서 병 상 배정이 이뤄지도록 해 보다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 \* 7개 권역 구성

권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구성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 충북·충남	광주·전북·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 아울러 재유행을 대비하여 기 감축한 거점전담병원 등에 일반병 상 소개 및 전담병상 전환 협조를 요청하여 필요 시, 신속하게 예 비병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할 예정이다.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탄탄한 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 협조를 당부하였다.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네 병·의원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및 원스톱 진료기관에 참여하도록 지속 독려하고, 운영 초기 국민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충실히 해줄 것을,
  - 권역 내 지자체 간에는 병상대응 상황 및 향후 병상 운영계획 등을 공유하여, 권역별 병상공동 배정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 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 2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활용방안 추진

-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4.15)'의 일환으로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과 병상 감축 운영을 추진함에 따라 코로나19 치료 시 사용해 온 정부 지원 의료장비의 활용 및 관리방안을 논의하였다.
- □ 정부는 원활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치료 및 음압병 상 운영을 위한 의료장비 등을 지원해 왔으며, 그간 350개 병원, 총 40개 품목, 2만 8천대를 지원해 왔다.
  - 이들 장비는 **국가전산시스템**\*으로 **전수 등록・관리**하고 있다.
    - \* 진료·치료장비(중수본)는 국고지원장비관리시스템(건보공단 운영, '22.6월~),





격리·치료장비(방대본)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 운영, '20.2월~)으로 관리

- 정부 지원 의료장비는 국고보조금 교부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장비 내용연수 내 임의처분(양도, 교환, 대여 등)이 금지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 또한, 코로나19 재유행, 신종 감염병 대응 시 해당 장비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간 재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 <b>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현황</b> ('22.6월 말 기준'	<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b>현황</b> ('22 6웍	맠 기준)	>
-------------------------------------------	---	-------	------	------	-------------------	-------	---

구분	총계	이동형 음압기	이동형 음압들 것	이동형 휠체어	고유량 산 <b>소</b> 료 기	인공 호흡기	에크모	혈액투석기 (CRRT)	이동형 초음파	비디오 후두경	이동형 X-ray	기타
총 계 (대수)	27,993	8,177	630	134	2,016	1,078	101	24	35	36	76	15,686
진료·치료 장비 (중수본 <sup>*</sup> )	17,187	737	51	32	322	178	10	24	35	36	76	15,686
격리·치료 장비 (방대본 <sup>**</sup> )	10,806	7,440	579	102	1,694	900	91	-	-	-	-	-

- □ 정부는 의료장비들이 잘 관리되어 환자 치료에 원활히 이용되도록 하고 재유행 시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관리, 활용방 안을 마련하였다.
  - 7월 중, '의료장비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장비의 보관과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기관에서 자체 보관이 어려운 이동형 음압기에 대해서는 별도 수요조사를 거쳐 정부에 반납을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통합하여 보관하도록 하 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또한, 재유행 시, 각 의료기관이 보유한 장비를 **코로나19 치료**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 시 정부가 보유한 물량을 재배치**하도록 해





장비들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3 주요방역지표 현황

### 【병상】

- □ 6월 30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27병상이 감소한 6,343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7%, 준-중증병상 8.2%, 중등증병상 4.6%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0%이다.

< 6.30. 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위경	중증(危重	症)	준경	중증(準-重	重症)	중등	⋚(中等症	)병상	무증	상·경증(	輕症)
	구분 (개,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 11, 76)	보유 (증감)	사용 (기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물)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기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기동률)	가용 (증감)
	전국	1,486	84	1,402	2,356	193	2,163	2,385	109	2,276	116	7	109
	연속	(-10)	(5.7)	(-9)	(-27)	(8.2)	(-23)	(-90)	(4.6)	(-100)	(+0)	(6.0)	(+1)
=	수도권	1,137	57	1,080	1,758	119	1,639	1,261	53	1,208	116	7	109
	ᅮᅩ건	(-2)	(5.0)	(-1)	(-13)	(6.8)	(-19)	(-36)	(4.2)	병원 생활치료센 (증감)	(+1)		
	중수본	0	0	0	0	0	0	0	0	0	116	7	109
	서울	140	22	118	232	29	203	268	30	238	0	0	0
	경기	651	29	622	964	67	897	557	13	544	0	0	0
	인천	346	6	340	562	23	539	436	10	426	0	0	0
н	l수도권	349	27	322	598	74	74 524 1,124	56	1,068	0	0	0	
"	기구포건	(-8)	(7.7)	(-8)	(-14)	(12.4)	(-4)	(-54)	(5.0)	(-58)	(+0)	(0)	(+0)
	중수본	0	0	0	0	0	0	0	0	0	0	0	0
	강원	36	3	33	12	4	8	36	4	32	0	0	0
	충청권	87	6	81	93	13	80	493	4	489	0	0	0
	호남권	100	7	93	180	31	149	246	25	221	0	0	0
	경북권	51	3	48	125	15	110	259	10	249	0	0	0
	경남권	67	7	60	165	11	154	66	9	57	0	0	0
	제주	8	1	7	23	0	23	24	4	20	0	0	0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 【위중증·사망자】

- □ **7월 1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6명**(전일 대비 2명 증가)으로 1백명 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8명이고, 60세 이상이 5명(62.5%)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272명이고, 확진자(9,528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3.4%이며, 최근 1주간 13.0%~17.3%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재택치료 현황】

-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9,448명**으로, 수도권 **5,217명**, 비수도권 **4,231명**이다. 현재 **466,873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7.1.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1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 관은 현재 844개소(7.1. 0시)로 13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2,601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206개소가 있다. (6.30. 17시 기준)
  - \* 병원 시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디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2개소 운영**되고 있다. (7.1. 0시 기준)

###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하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첨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sup>'</sup>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 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